

의안번호	2209205
의 퇴 인	박해철 의원
회 답 일	2025. 4. 24.
추계번호	25B1758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3조제1항 (농어촌학교 학생 의 교육 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, 수업료,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. <u>다만, 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하여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통학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이 부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함(단서 신설)</u>	의무규정

II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3조제1항(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경비 지원(안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)

-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하여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통학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이 부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임

-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학교 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통학경비 지원을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, 개정안은 학교가 통폐합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학경비 지원을 의무화함
 - 농림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 및 교육부에 따르면,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촌학생에 대한 통학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고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11¹⁾에 따라 교육감이 통학 지원 사업을 실시 중임
 - 교육감의 농어촌학교 학생에 대한 교통수단 제공 현황은 첨부 [참고자료 1] 참고
 -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을 통해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취약 지역 거주 주민, 고령자,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소형버스,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고, 통학생도 이용이 가능함(첨부 [참고자료 2] 참고)
 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하여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통학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이 부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할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통학용 교통수단 지원 대상 학생 수 및 학생 1인당 지원단가 등을 알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- ※ 참고로, 교육부의 「적정규모 학교 육성 권고 기준」(2015. 12. 발표)에 따르면, 면·도서·벽지는 60명, 읍지역은 초등학교 전교생 수 120명 및 중·고등학교 전교생 수 180명 이하인 경우 통폐합을 권고하고 있지만, 의무사항은 아님²⁾

1) 제60조의11(통학 지원) ①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2) [참고자료 3] 학교 통폐합 현황 및 통폐합 권고 기준보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 수 현황 참고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nabo.go.kr

[참고자료 1] 교육감의 농어촌학교 학생에 대한 교통수단 제공 현황

(교육부 제출자료)

❖ 출처 : 2024년 농어촌학교 통학수단 현황에 대한 시도교육청 제출자료(관내 농어촌이 있는 14개 시도교육청)

□ 사업 개요

- (목적) 통학차량 등 수요자 맞춤형 통학 지원을 통해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 및 등·하교시 안전사고 예방 등 통학 안전 보장
- (시행주체/지원대상) 시·도교육청 / 농어촌 소재 학교 학생(초·중·고)
- (추진체계)

기관	역할
시·도교육청	· 농어촌 학생 통학버스 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
교육지원청	·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학버스 관리 운영계획 수립
학교	· 통학버스 운영 및 관리

※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·예산에 따라 운영

□ 2024년 시·도교육청별 통학차량 예산 현황

(단위: 천원)

시도	교육청 자체 부담	지자체 지원액	기타 외부 지원	합계
인천	4,061,938	—	—	4,061,938
대전	725,207	—	—	725,207
대구	1,446,664	—	—	1,446,664
울산	1,959,201	—	—	1,959,201
세종	4,756,680	—	—	4,756,680
경기	8,251,780	5,719,101	40,000	14,010,881
강원	18,368,936	1,565,345	—	19,934,281
충북	14,503,733	—	—	14,503,733
충남	26,951,030	1,922,783	1,895,216	30,769,029
전북	18,070,984	—	—	18,070,984
전남	25,965,531	1,277,522	—	27,243,053
경북	24,441,309	—	—	24,441,309
경남	30,799,653	—	—	30,799,653
제주	4,340,000	—	—	4,340,000
합 계	184,642,646	10,484,751	1,935,216	197,062,613

※ 교육청별 통학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및 지자체·유관기관 지원 예산액

□ 2024년 시·도교육청별 통학지원 현황

(학교수, 단위: 교)

시 도	학교 구분	지원 내용				합 계
		통학버스	통학택시	교통비	2개 이상	
인천	초	25	-	-	-	25
	중	4	-	-	-	4
	고	11	-	-	-	11
대전	초	1	-	-	-	1
	중	-	-	-	-	-
	고	-	-	-	-	-
대구	초	15	1	-	1	17
	중	3	-	-	1	4
	고	-	-	-	-	-
울산	초	6	-	-	1	7
	중	-	-	-	-	-
	고	3	-	-	-	3
세종	초	15	-	-	-	15
	중	5	1	-	-	6
	고	1	-	-	-	1
경기	초	218	-	-	-	218
	중	17	-	-	-	17
	고	2	-	-	-	2
강원	초	234	1	-	19	254
	중	85	2	-	5	92
	고	44	-	-	-	44
충북	초	125	10	2	16	153
	중	1	14	6	-	21
	고	-	-	-	-	-
충남	초	266	2	-	-	268
	중	7	8	9	3	27
	고	6	-	-	-	6
전북	초	225	63	-	46	334
	중	4	1	100	4	109
	고	-	-	44	-	44
전남	초	163	29	2	396	590
	중	31	73	1	177	282
	고	1	-	45	-	46
경북	초	225	6	-	3	234
	중	10	4	-	1	15
	고	4	-	-	-	4
경남	초	235	-	13	10	258
	중	39	10	4	8	61
	고	-	-	-	-	-
제주	초	26	-	-	-	26
	중	-	-	-	-	-
	고	4	-	-	-	4
합계		2,061	225	226	691	3,203

□ 시·도교육청별 통학차량 지원 기준

시도	통학버스 지원 기준
울산	· 학교에서 거주지까지의 반경거리가 1.5km 초과인 초등학교 수 20명 이상 학교 통학버스 지원, 20명 미만 통학비 지원 · 초등학교 통폐합 인센티브 및 농촌지역 공동통학구역에 따른 작은학교 지원
충북	· 통폐합 초등학교와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등 통학불편학교 학생 중 학구 내 및 공동(일방)학구에서 1.5km 이상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을 수송하는 차량에 대하여 탑승대상 학생 수, 운행 노선, 운행 횟수, 등하교 소요시간 등을 판단하여 버스 또는 택시로 지원
충남	· (초등학교) 면지역 학교 및 읍지역 120명 이하 학교 대상 통학여건 고려 배정 · (중학교) 면지역 200명 이하 학교 중 자체부담 30% 이상 확보 신청학교를 대상으로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배정 · (공통기준) 통학차량 배정은 1교 1대를 원칙, 통폐합학교 및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추가배정 가능
전남	· (통학버스) 통학이 취약한 농어촌지역 학구 내 초·중학생 대상 임차버스 지원 · (통학택시) 원거리 통학(편도 2km 초과)으로 버스 이용이 어려운 학구 내 초·중학생 대상 임차택시 지원 · (통학비) 공·사립 유·초·중·고·특 특수교육대상자 원거리(2km이상) 통학에 따른 통학비 지원
경북	· (초등학교) 통폐합학교와 농어촌지역(읍·면)의 통학 학생 중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통학로의 실제 이동 거리가 1.5km 이상인 원거리 통학 학생에 대하여 승차인원 수, 운행노선, 운행횟수, 운행시간 등을 판단하여 지원여부 결정 · (중학교) 통폐합학교와 농어촌(읍·면) 지역 중학생 중 대중교통이 없고, 통학버스 지원이 없는 학생에 대하여 승차 인원 수, 운행노선, 운행횟수, 운행시간 등을 판단하여 지원여부 결정

[참고자료 2]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개요

(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)

- (추진배경)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공공교통수단 이용에 한계가 있어, 농촌 주민들이 의료·문화·복지 등 서비스 이용에 애로
 - 행정리(37,563) 중 시내버스 미운행·3회미만 운영 8,049개소(21.4%)(‘20)
- (목적) 지역공동체 중심의 교통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공공서비스 거점과 배후마을 간 접근성 제고 및 주민 체감복지 향상
- (지원대상) 지자체(군 지역)
- (지원자격·요건)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
 - 지자체 직접, 운수사업체, 마을자치회 및 기타 비영리법인 등 연계
- (지원내용) (버스형) 차량구입 및 개조비, 기사 인건비, 유류비 등, (택시형) 운행손실보상금 등
 - (지원금액) 군당 350백만원(버스형 300, 택시형 50)
 - 광역지자체에서 시·군 간 예산 조정 등 자율 배분이 가능하며,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수요가 있는 경우 지원기준금액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음
- (추진경과) 시범사업(‘14~’18)을 거쳐 전국 82개 군(郡)지역으로 확대·시행(‘18년~)
 - 82개 군 지역은 농식품부(농촌형), 78개 시 지역은 국토부가 주관(도시형)
- (추진실적) ’24년 기준 81개 군* 지역에 498억원(국비 50%, 지특회계) 지원
 - * 울릉군 미참여
 - ** 예산 추이(국비, 억원): (‘21) 205 → (‘22) 209 → (‘23) 215 → (‘24) 249

[참고자료 3] 학교 통폐합 현황 및 통폐합 권고 기준보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 수 현황

(교육부 제출자료)

□ 최근 10년(2013~2023년) 간 학교 통폐합 현황

(2023.3.1. 기준, 단위: 개소)

	초등학교	중학교	고등학교	합계
2014	27	5	8	40
2015	26	4	3	33
2016	24	19	—	43
2017	32	21	5	58
2018	29	15	4	48
2019	34	15	4	53
2020	20	13	—	33
2021	20	4	—	24
2022	17	6	2	25
2023	18	3	1	22
2024	24	3	2	29
합계	271	108	29	408

주: 매년 교육부 보통교부금(통폐합 인센티브) 확정교부 자료 기준
자료: 교육부 제출자료

□ 통폐합 권고 기준보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 수

○ 통폐합 권고 기준

— (면·도서지역) 60명 이하, (읍지역) 초등학교 120명, 중·고등학교 180명 이하

(2024.4.1. 기준, 단위: 개소)

	초등학교	중학교	고등학교
면지역	1,389	542	55
읍지역	273	117	34

주: 2024.4.1. 기준 교육통계 자료 공·사립 초·중·일반고 본·분교(휴교 포함)
자료: 교육부